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방안

<추진배경>

- 다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금융이 대형화·겸업화되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사업구조를 채택하고 있음.
 -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, M&A의 활성화,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one-stop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
- 국내 금융그룹 중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있는 금융-비금융 계열집단형 그룹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.
 -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母子형 순수금융그룹, 금융-비금융 계열집단은 사업구조상 대형화·겸업화에 따른 경영효율성의 제고에 한계가 발생
 - 특히, 금융-비금융 계열집단은 개별 금융회사 단위의 규제·감독만이 이루어지므로 그룹단위의 위기에는 취약점이 노출됨.
- 국내 금융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였음.

<비은행지주회사 제도 개선>

- 지주회사의 금융-비금융 자회사 동시보유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를 다음에 한하여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하도록 개선함.
 - 보험지주회사: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비금융회사를 직접 지배하는 것만을 허용(非금융 孫子회사 지배는 금지)
 - 금융투자지주회사: 직접 지배방식 외에 금융자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지배(손자회사 등)하는 방식도 허용

□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 허용 등에 따라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(손자)회사에 대한 신용 공여시 지주회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지원을 제한함.

○ 금융감독당국의 비금융 자(손자)회사에 대한 임점검사(臨店檢査)와 금융 지주회사와 대주주와의 거래도 제한함.

□ 비은행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인정함.

○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출자규제 등 행위제한의 적용에 관하여 5년(2년 연장 가능)의 유예기간 부여함.

<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 개선>

□ 현재 동종업종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임직원 겸직을 일정한 보완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

□ 후선업무·전산업무 및 해당 인가를 받은 자회사 사이의 업무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자회사 간 업무위탁의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

□ 일정한 보완장치를 전제로 현행법상의 출자한도를 폐지하고 사후감독으로 전환하여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의 규제를 개선

□ 해외진출의 경우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거의 없는 만큼 자회사 사이의 공동출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, 금융회사 간의 위험전이(Risk Contagion)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

□ 과도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없는 해외의 경우 증손회사 지배를 국내보다 넓게 허용

(은행법/금융지주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,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, 10/14)